

憲法裁判所 關聯規定

民正黨 改憲案	檢 討 意 見	備 考
<p>第6章 憲法裁判所</p> <p>第 110條 ① 憲法裁判所는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. 彈劾의 審判 3. 政黨의 解散審判 4. 國家機關間,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. 法律이 定하는 憲法訴願의 <p>② 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 人의 裁判官으로 構成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</p> <p>③ 第 2項의 裁判官中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.</p> <p>④ 憲法裁判所의 裁判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.</p>	<p>『法官의 資格을 가진』 削除하고, 第 111條 第 4項에 法律委任根據 規定</p> <p>『裁判長』을 『長』으로 修正 (2쪽면)</p>	<p>※ 與野間 合意로 5號 追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裁判官 全員에게 法官資格을 要求할 경우, 現實的으로 憲法裁判에 精通한 公法學者의 參與可能性 封鎖 ○ 裁判官資格 法律委任規定을 第111 條에 둬으로써 憲法裁判에 公法學者의 參與可能性 確保 ○ 裁判長은 機關長의 名稱으로 不適 ○ 憲法裁判所의 權威를 위하여 『憲法裁判所 所長』名稱使用

第 111條 ①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

②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.

③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.

第 112條 ① 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審判, 彈劾의 審判 또는 政黨의 解散의 審判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.

②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運營 기타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.

『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』를 削除하고 『하며』를 『한다』로 修正

『④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定한다』 條項挿入

『또는 政黨의 解散의 審判을』을 『政黨의 解散 審判 또는 憲法訴願에 의한 法律의 無效宣言을』로 修正

- 裁判官이 連任을 意識하여 政治的 中立性을 損傷할 憂慮를 考慮하여 連任不可하도록 하는 것이 世界的 立法例
- 連任이 可能하도록 할 경우에도 法律委任하여 伸縮性 賦與함이 바람직

○ 現行憲法 規定體系 維持

- 立法에 대한 憲法訴願을 認容하여 法律의 無效를 宣言하는 것은 內容上 法律의 違憲審判을 包含하는 것이므로 法律無效宣言의 경우도 議決定足數 強化要